

의안번호	제 42 호
의결연월일	

의결사항

사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

발의자	박종권의원 외4인
발의연월일	2005. 8 . 18

사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(박종권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제42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05. 8.

발의자: 박종권,진삼성,성재윤,
최갑현,이연성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 제18991 : 2005. 8. 5)되어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,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사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6조(회기수당 지급기준) 지급범위 조정(현행 출석일수 1일 70,000원 이내로를 100,000원 이내)
-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방법 개선.

3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(2005. 8. 5. 개정)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중 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”을 “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중 “70,000원”이내를 “100,000원”이내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회기수당 지급기준)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<u>70,000원</u> 이내로 한다.</p>	<p>제6조(-----) ----- ----- --<u>100,000원</u> -----</p>

관계 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5조 (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, 회기수당(원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)의 지급기준은 별표 6,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1995.12.30, 1999.12.31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,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<개정 1999.12.31>

[별표6]

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(제15조 관련)

구분	회기수당 지급범위	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
시·도 의회의원	일 110,000원 이내	별표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(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)숙박비 및 식비(3분의1)의 범위 이내
시·군 자치구의회의원	일 100,000원 이내	